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1 발의연월일: 2021. 6. 11.

발 의 자: 박성중·김석기·김영식

김용판 · 김형동 · 유경준

윤창현ㆍ이 영ㆍ조명희

추경호 · 홍준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클라우드컴퓨팅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하는데, 비대면 사회의 핵심 기반 정보처리체계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에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2015년 발표한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약 83%가 소규모 전산실에서 보안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이어서 클라우드컴퓨팅 전 환에 핵심적인 보안 문제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고, 각종 가 이드라인으로 인하여 국가기관등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을 중앙 행정기관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서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와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20조).

법률 제 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을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는"을 "국가기관등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공공기관"을 "국가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부는 공공기관이"를 "국가기관등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	클라우드컴퓨
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	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	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
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	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u>.</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
퓨팅 도입 촉진) ① (생 략)	퓨팅 도입 촉진) ① (현행과 같
	으 :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	② <u>국가기관등은</u>
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	
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제20조(<u>공공기관</u> 의 클라우드컴퓨	제20조(<u>국가기관등</u> 의 클라우드컴
팅서비스 이용 촉진) <u>정부는</u>	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u>국가기</u>
<u>공공기관이</u> 업무를 위하여 클	<u> 관등은</u>
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